

한국유전자세포치료학회 연구(분과)회/지역분회 규정

제1조 (설치근거) 정관 제5조에 따라 연구(분과)회 및 지역분회(이하 분회)를 둔다.

제2조 (목적) 학술 분야 또는 지역 학계의 학술 발전, 정보 교류,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명칭) 명칭은 한국유전자세포치료학회 **연구(분과)회 (KSGCT Chapter for **) 또는 **지역분회 (KSGCT ** Branch)라 한다.

제4조 (설립, 해체) 설립, 해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- ① (설립) KSGCT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가입 정회원 10명 이상이 동의하여 분과/분회의 설립을 신청하면,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설립할 수 있다.
- ② (해체) 분과/분회 회원 2/3 이상이 동의하여 해체를 신청하면,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할 수 있다. 또한 분과/분회의 활동이 부적절하면,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 될 수 있다.

제5조 (사업)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① 학술 강연, 세미나 및 연구발표회
- ② 학술자료 및 정보의 교환
- ③ 학술 분야 사이의 친목 도모
- ④ 기타 학술 분야 발전에 필요한 사업

제6조 (조직 및 재정) 조직 및 재정은 다음과 같다.

- ① 분과/분회에 위원장, 부위원장, 운영위원 등의 임원을 둘 수 있으며, 모든 임원은 KSGCT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 학회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② 분과/분회는 연회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, KSGCT는 제8조에 명기된 바와 같이 지원한다.

제7조 (지원 신청 방법 및 보고) 분과/분회의 학회 지원 신청 방법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.

- ① (사업계획) 분과/분회는 사업 시작 전 1 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(승인) 운영위원회는 지원조건 따라 행사 지원 자격 여부를 심사하며, 승인 후 사업 시행 전 지원금을 지급한다.
- ③ (결산) 학회 결산 및 제 위원회 보고를 위하여 11월까지 모든 행사를 종료하여야 한다. 단, 12월에 행사를 원하는 경우 11월까지 모든 수입의 카드 처리를 완료할 경우에만 가능하다.
- ④ (사업결과) 사업결과는 당해연도 11월까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된다.
- ⑤ (기타) 분과/분회의 모든 사무활동은 자체적으로 진행하며, 학회는 제8조에 명기된 지원 사항을 지원한다.

제8조 (학회의 지원 방법) 학회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- ① (지원금) 학회는 분과/분회의 행사에 회의장 대관료, 회의비, 인쇄비, 연사료 등의 항목으로 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. 단, 이때 학회의 지원금 총액은 분과/분회의 연회비 수입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당해 연도 지원금은 차년도 이월이 불가하다.
- ② (분과/분회 연회비 및 등록비) 분과/분회 통장 및 KSGCT 홈페이지를 통한 카드결제를 이용하여 결제하며, 영수증은 학회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사용한다. 단, 학회는 부대비용 (카드수수료 등)을 제외한 결제 금액을 분과/분회 담당자에게 송금한다.
- ③ (광고, 부스, 후원업체 비용) 후원업체 등에 학회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,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분과/분회 담당자에게 송금한다.
- ④ (홍보) 분과/분회 요청시 행사자료를 회원을 대상으로 메일링 회람한다.

제9조 (분회 정관): 분과/분회는 본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, 별도의 분과/분회 규정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도 있으며, 이사회가 분과/분회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0조 (기타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.

제11조 (부칙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